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

■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30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23인
2. 제안일 : 2024. 7. 25.
3. 회부일 : 2024. 7.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 ----- ----- ----- -----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 대상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이행을 권고하여야 한다.</u>

<신 설>	제19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와 별개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보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내역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
지수당

(보훈예우수당)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명예수당

(복지지원)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 자동차세 감면, 화장장 이용료 감면 등

(의료지원) 의료급여 수급 및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 등

(선양사업) 주요 계기별 유공자 위문, 기념비 건립사업 등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인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동 수당은 기초(특별
자치단체 포함)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10~60만원으로 편차가 크고,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월 3.3만원~25만원으로 지급액이 상이함.²⁾³⁾

2)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현재 국가보훈부는 동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명예형 수당으로 매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3. (생략)

② ~ ⑦ (생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2만원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별 현황>

('24.7월 기준, 단위 : 만원)

금액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	36	40	45	46	60
지자체	228	5	2	6	35	2	30	6	3	11	3	28	9	8	6	1	19	11	15	2	3	4	3	13	1	1	1

※ 지방자치단체(기초 226곳, 특별자치 2곳) 전국평균액 210,000원 ('23.7월 기준 : 183,000원)

* 참전구분별(6·25/월남) 및 연령별 지원액이 다른 경우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자료: 국가보훈부

구분 시·도	광역단체(17곳)		기초자치단체(226곳)	
	지원여부	금액	지원여부	금액
서울	○	15만원	△	0~10만원
부산	○	10만원	△	0~20만원
대구	○	11.2만원	○	1.8~16.8만원
인천	○	10만원	○	5~2만원
광주	○	10.4만원	○	2.6만원
대전	○	10만원	○	5만원
울산	○	14만원	○	6만원
세종	○	15만원		
경기	○	3.3만원	○	10~22만원
강원	○	6만원	○	15~40만원
충북	○	6만원	○	13~25만원
충남	○	10만원	○	30~50만원
전북	○	4만원	○	6~11만원
전남	○	5만원	○	7~20만원
경북	○	10만원	○	10~20만원
경남	○	12만원	○	13~18만원
제주	○	25만원		

※ 월 지급액 기준임(단, 경기도의 경우 연1회 40만원 일시지급)

*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개정안은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입법취지는 일응 긍정적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등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지방자치단체 내의 수혜대상 간 형평성, 참전자 유형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의 체계·자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형평 고려’의 경우, 법안의 취지상 형평성 고려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국가’를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19조제2항(예우 및 지원)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보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4) 다만, 안 19조제3항 가이드라인 마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의 이행실적을 점검·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야 한다는 입장임.